

「진로교육법」의 제정과 시행

문승태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I. 「진로교육법」 제정의 의미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학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mismatch), 고학력 청년층의 구직난,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과잉교육(over-education) 및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 증가로 대학졸업 인력의 초과공급이 발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정책과제에 의하면 고졸 인력은 32만 명 부족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 인력은 50만 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및 정보 부족으로 개인의 소질·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해당 직종에의 과잉 선호 현상 때문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 진로교육법이 통과되었다. 진로교육법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며,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려 소질과 적성에 맞추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듯 진로교육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의 진로교육에 대한 욕구의 증대, 진로교육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행복교육’, ‘창의교육’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교육법의 제정 및 국회 통과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진취적인 진로 개척 능력 및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성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정책의 지원,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진로교육의 성과 및 책무성이 확보되었다. 아울러 국민으로 하여금 급속한

경제적 환경 및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행복한 삶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

Ⅱ. 진로교육법안의 주요 내용

1. 「진로교육법」의 목적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로교육법」의 제정 경과

법안발의('13.1.10. 김세연의원) → 교문위 법안소위 상정 · 통과('13.6.24.) →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15.4.28.) → 교문위 전체회의('15.5.1.) → 법사위 전체회의('15.5.6.) → 국회 본회의('15.5.29.) → 국무회의('15.6.16.) → 공포('15.6.22.)

3. 진로교육의 주요 내용

첫째, 진로교육법은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 그리고 학생 발달단계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학교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진로교육법은 학교에 진로 담당교사 및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학교 진로교육 활동(심리검사, 상담, 진로수업 등), 진로교육에 대한 콘텐츠 개발 · 보급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학교장은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의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진로체험 활성화를 담고 있다.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법에는 국가 · 지자체의 진로 체험처 제공 의무화, 무료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교육기부 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학생의 진로체험 또한 수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넷째,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을 담고 있다. 진로교육법에 진로교육 전문기관인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설치, 진로교육 정책의 지원·자문을 위한 ‘국가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있다. 진로교육은 중앙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진로교육법에는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강조되어 있고, 더불어 진로교육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자체의 설치·운영 지원의 근거, 시·도교육청·지자체·산업체·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여섯째, 진로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가 담겨져 있다. 진로교육법에는 진로교육 실태조사 및 교육청의 진로교육 평가 근거, 그리고 교육청에서 행할 수 있는 관내 학교의 진로교육 평가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진로교육의 성과와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Ⅲ. 추진 방향 및 정책

1. 진로교육 시책 마련

정부가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마땅하다. 한 사회의 미래는 진로교육에서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계획에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장애인 및 학업 중단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학부모 및 지역인사 등의 진로교육 참여 및 연수 제공, 대학진로교육 지원 방안,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시·도 진로교육 평가 및 행·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가. 학생들의 진로활동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첫째, 진로교육 및 체험 관련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활성화하는 일이다. 즉, 텍스트 중심의 진로정보 생산과 교육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체험 중심의 종합진로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 창의적인 진로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진로정보망을 구현하는 것, 평생직업진로 개발 및 설계를 위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지원의 진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진로현황 및 평가 등 진로 관련 통계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일이다. 교육 분야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각종 교육 데이터를 통합·연계하여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인 진로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 ‘진로교육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협력체계를 내실화하는 일이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진로체험 협의체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나. 진로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기존 학교진로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초·중·고 학교 급별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성취기준을 개정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다. 즉, 성취기준 개정에 따른 교과통합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초·중등을 연계한 진로활동 기록 및 중학교 이후 개인별 진로계획을 작성하는 일이다. 둘째,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일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량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대영역과 핵심역량을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진로와 직업교육과정 및 현행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하는 일이다. 셋째, 학교 진로교육의 집중학년·학기제의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거나 진로전문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자유학기제 경험을 바탕으로 Post-자유학기제 단계학년의 진로 진학설계를 지원해야 한다.

다. 진로정보 및 진로 콘텐츠를 다양화해야 한다.

첫째,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을 지원하고, 나아가 SCEP의 위상 정립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홍보를 추진하는 일이다. 둘째, 다양한 진로검사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공신력 있는 NEIS 자료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상담을 유도하고, 진로설계 플래너 서비스를 확대하며, 초·중·고교의 학습계획과 진로계획을 연계하는 것이다. 셋째, 학부모·성인·진로취약계층을 위해 진로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이다. 학교진로교육지도를 제작하여 현장교사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이용하게 하고, 직업과 관련된 진로교육용 직업정보·진학정보의 콘텐츠 및 동영상을 개발·보급하며, 진로정보 수요자에 따른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 진로교육의 대상층을 확대해야 한다.

첫째, 초·중·고·대학교 급별 체계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는 Pre-자유학기제 단계의 진로개발 기초 함양을 위하여 관심과 흥미 분야 찾기 체험 실시 및 중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미니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졸업 후 선취업 경력경로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후진학의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즉, 학교 급별에 따라서 진학과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부모 및 일반성인의 진로인식 전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진로 결정기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로상담과 진로이해를 강화하고, 나아가 학부모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여 진로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등 진로취약계층을 위한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일이다. 이것은 부적응·위기 학생, 중도탈락 학생 등을 위한 진로교육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자, 대안학교 학생들과 다문화·북한이탈 학생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마. 진로교육 지원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학교 내에 있는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생애주기별 진로 직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둘째, 학교 밖에 있는 학부모의 진로코치를 함양하고 육성하는 일이다. 이는 진로 결정기에 있는 학

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담임교사 및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체계적인 진로상담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학생의 진로체험 및 활동에 학부모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셋째, 진로재능기부자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을 ‘교육기부’로 제도화하여 관리하는 것, 전문직업인이나 지역인사의 멘토 풀을 구성하여 멘토 활동을 지원하는 것,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나 인력에 대한 컨설팅 및 연수 실시로 그들의 교육기부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3.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질 제고 방안 모색

현재 진로전담교사인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전체 중등학교의 94.5%(중등학교 전체 5,520개교에 5,009명, 순회교사 206명, 전체 5,215명) 정도 배치되어 있다. 그렇다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학교관리자, 담임교사, 교과교사 등 다른 교원의 진로교육인식 저조’, ‘학교관리자의 진로교육 마인드 부재 시 진로교육 실행 저조’, ‘일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 실행 부족’, ‘수업 이외 업무가 많은 진로교사의 직무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평가 등으로 진로진학교사들의 사기 저하’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및 사회의 인식 확대와 인프라 구축,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질 제고를 위한 심화 및 전문화 과정 연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IV. 「진로교육법」 제정의 기대 효과

진로교육법이 시행되면 교육의 모습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진로교육법의 시행은 진로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양, 그리고 진로교육의 지역사회의 확대에 의해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학생 개인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 급별로 차별화된 진로교육 및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통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진로를 개척함과 더불어 지속적인 진로개발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부모 측면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다. 학부모는 미래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및 자녀 진로교육 전략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무엇보다도 진로교육 설명회 및 연수 기회의 확대로 학부모 진로코치, 모니터단 운영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 측면에서는 보다 더 전문적인 진로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 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진학전담교사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학교 관리자·일반교사·예비교원 등의 지원인력을 통한 학교진로교육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대학, 사회직능단체, 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모델의 진로 및 직업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인데, 이는 직업체험기관을 인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으로 체험의 양은 물론 질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전반적인 국가 진로교육의 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통한 진로교육센터 건립 및 지역체험기관 인증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진로교육의 취약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 수립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you

행복한 일자리, 역량있는 직업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행합니다